
제일 알찬연금보험 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의 체결후에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고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개인계약으로 계약을 변경

하여 드립니다.

제3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에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서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에, 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①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드립니다.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 조 동항 제2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주피보험자의 사망시는 주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8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9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행복설계자금 지급
 2.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었을 때 : 유족생활연금 지급
 - 가.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나. 별표5(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하는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다.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금 지급
 4.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생활연금 지급
 5.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소득보장형에 한함) : 소득보장연금 지급
 6.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수우대형에 한함) : 장수우대연금 지급

7. 주피보험자가 69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고희축하금 지급

8.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별표4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애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애연금 지급

9.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장애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8호의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또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고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항 제9호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장애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장애가 있었던 주피

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⑧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애진단을 기준으로 장애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가목, 제8호, 제9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⑩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및 장수우대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으로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21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3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행복설계자금, 해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금, 고회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⑥ 행복설계자금, 해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금, 고회축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6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 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1) _____

1.

가.

	1	2
45 ~ 69		1

	1	2
45	45	1
50	50	1
55	55	1
60	60	1
65	65	1

) 45

가

2.

(: 가 5,000)

(10 1 1)

	1	가
	3 , 5	
	3	100
	5	200

(10 1 2 , 가)

	1	가
	400	20

(10 1 2 ,)

	1 가		
		2	200 20
		2	400 20
			400 20

(10 1 2 ,)

	1 가		
		2	250 +
		2	250 20
			250 20

(10 1 3)

	2 가
	500

(10 1 4)

	2 가
	500 , 10 가 10 .

(10 1 5)

	2 가 ()
	2 250 10

(10 1 9)

	1	가
	1	2
	6	가
	1	2,500
	2	1,750
	3	1,250
	4	750
	5	375
	6	250

) 1. , ,
, ,
3 , 6
+ 1%

2.

(2) _____

1.

┌ 가 10 , 35
└ 55 ,

()

1	401	0	384	0
1	4,812	1,369	4,608	1,167
3	14,436	10,999	13,824	10,345
5	24,060	20,302	23,040	19,122
10	48,120	47,916	46,080	45,008
15	72,180	92,819	69,120	87,330
20	96,240		92,160	

()

1	421	0	418	0
1	5,052	1,670	5,016	1,642
3	15,156	11,982	15,048	11,891
5	25,260	22,093	25,080	21,929
10	50,520	52,359	50,160	51,957
15	75,780	100,656	75,240	99,907
20	101,040		100,320	

)

2.

□ 가 10 , 35
 ↳ 55 ,

()

1	400	0	383	0
1	4,800	1,374	4,596	1,172
3	14,400	11,010	13,788	10,356
5	24,000	20,315	22,980	19,134
10	48,000	47,915	45,960	45,008
15	72,000	92,787	68,940	87,301
20	96,000		91,920	

()

1	429	0	427	0
1	5,148	1,706	5,124	1,677
3	15,444	12,076	15,372	11,984
5	25,740	22,223	25,620	22,058
10	51,480	52,445	51,240	52,043
15	77,220	100,523	76,860	99,775
20	102,960		102,480	

)

,

.

(3) _____

(,

)

*
1993 -3 , 1995. 1.1.) (

1.	V01 - V09
2.	V10 - V19
3.	V20 - V29
4.	V30 - V39
5.	V40 - V49
6.	V50 - V59
7.	V60 - V69
8.	V70 - V79
9.) (V80 - V89
10.	V90 - V94
11.	V95 - V97
12.	V98 - V99
13.	W00 - W19
14.	W20 - W49
15.	W50 - W64
16.	W65 - W74
17.	W75 - W84
18. ,	W85 - W99
19. ,	X00 - X09

20.	가				X10 - X19
21.					X20 - X29
22.					X30 - X39
23.					X40 - X49
24.					X58 - X59
25.	가				X85 - Y09
26.					Y10 - Y34
27.					Y35 - Y36
28.				,	Y40 - Y59
29.					Y60 - Y69
30.					Y70 - Y82
31.					Y83 - Y84
32.		2	1	1	

-.

(L23.3)

-.,가

A00 ~ R99

가 가

-.

-.

-.,

-.

-.(Y35.5)

3	1. 2. 3. 3 2 4. 5. 3 2 6. 5 가 7. 가 가 8. 4 가 9. 10 가 9.
4	1. 2. 3. 4. , 5. 3 1 6. 3 1 7. 가 5cm 8. 가 가 9. 가 가 1 가 3 가 10. 5 가

4	11. 가 가 3 가 12. 10 가 13. 5 가 14. 15.
5	1. 2. 3 2 3. 3 2 4. 가 가 5. 가 가 가 1 6. 가 가 2 가 가 7. 3 가 가 가 8. 가 가 가 1 가 3 가 9. 5 가 10. 가 2 가 4 가 11.

	12. 13. 가 14.
6	1. 2. 3 1 3. 3 1 4. 가 3cm 5. 가 가 6. 가 가 2 가 7. 가 가 2 가 8. 가 가 1 가 2 가 9. 가 4 가 10. 가 3 가

()

1. " " 가 가 가

2. " " 가

1) 가

2) 가 가

3. " " , . , .

4. " " 0.02 ()

5. " " 0.06 ()

6. " 가 " "

1) (ㄴ, ㄷ, ㄹ), (ㅈ, ㅊ), (ㅁ, ㅂ, ㅍ), (ㅇ, ㅎ) 3 가

2)

가

3)

가

· "

"

()

가

7. "

"

가. "

"

, 2

, ' 가

· "

"

가

8. "

"

500, 1000, 2000, 4000

a,b,c,d

()

$1/6(a+2b+2c+d)$

80

()

(

)

가

9. "

"

60

()

(40cm

)

가

10. "

"

가

가

11. "

"

3

(

, , , , , ,

) 가
()

12. " 가
3
1/2

13. " 가. " "

" 가 가 ,
1/4 2

" 가 가 ,
1/2 2

" 가 가 ,
2

14. " 가 3/4 " 가
가 가 (),
가 ()

" 가 " [()]
가 () 1/2]
(가 ()]

가 ()]
 , 가 .
 15. " 가 " "
 가. " 가 " "
 가 (가)
 . " 가 "
 가 () 1/2
 가 ()
) () [
 가 (가)]

16. " "
 가. (가 , ,
 ,)
 . (가 , ,
 ,)
 .
 .
 .
 .
 5, 3 8 1 5,6,7,8,9, 2 3,4,
 4 12
 , , ,10 가
 가 .

(5) _____

(
1993-3 , 1995. 1. 1)

1. ,	C00 - C14
2.	C15 - C26
3.	C30 - C39
4.	C40 - C41
5.	C43 - C44
6.	C45 - C49
7.	C50
8.	C51 - C58
9.	C60 - C63
10.	C64 - C68
11. ,	C69 - C72
12.	C73 - C75
13.	C76 - C80
14. ,	C81 - C96
15. ()	C97

제일알찬연금보험 유족연금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 와 동일합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주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유족생활연금(별표1“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특약 보험기간 중 주계약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특약 보험기간 중 주계약 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3. 특약 보험기간 중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주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

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6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9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
정을 준용합니다.

(1) _____

(: 가 5,000)

[]

가 (2 1 1)	400 20		
가 (2 1 2)		2	200 20
		2	400 20
			400 20

가 (1 2 3)		2	250 +
		2	250 20
			250 20

(2) _____

┌ 가 10
└ 35 , 55 ,

()

1	29	0	15	0
1	348	0	180	0
3	1,044	248	540	0
5	1,740	754	900	218
10	3,480	1,528	1,800	566
15	5,220	1,578	2,700	552
20	6,960	0	3,600	0

()

1	29	0	15	0
1	348	0	180	0
3	1,044	248	540	0
5	1,740	755	900	222
10	3,480	1,527	1,800	569
15	5,220	1,575	2 700	549
20	6,960	0	3,000	0

)

제일알찬연금보험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의 부부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이하“주피보험자”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 1.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계약 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행복설계자금 지급
 - 2.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었을 때 : 유족 생활연금 지급
 - 가.주계약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나.주계약 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다.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3.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

금 지급

4.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건강생활연금 지급
 5.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소득보장형에 한함): 소득보장연금 지급
 6.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장수우대형에 한함): 장수우대연금 지급
 7.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69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고희축하금 지급
 8.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매년 장해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해연금 지급
 9.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여금 지급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8호의 장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또 다시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1항 제9호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

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장애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 하는 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종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 2.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⑧ 제1항의 경우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애진단을 기준으로 장애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종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가목, 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⑩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및 장수우대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차년도 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종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7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종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4. 보험증권
 -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

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④ 회사는 행복설계자금, 해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금, 고회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⑤ 행복설계자금, 해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금, 고회축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_____

(: 가 5,000)

(3 1 1)

	1	가
	3	5
	3	50
	5	100

(3 1 2 , 가)

	1	가
	400	20

(3 1 2 ,)

	1 가		
		2	200 20
		2	400 20
			400 20

(10 1 2 ,)

	1 가		
		2	250
		2	250 20
			250 20

(3 1 3)

	가 2
	250

(3 1 4)

	2 가 2 가 , 가 10 10
	2 10 가 , 2 10 가
	2 10 가 가
	250

(3 1 5)

	가 2 ()
	2 125 10

(3 1 6)

2 가 2 가	2 6 50 5 50 , 2 10 가 6 10
2 10 가 , 2 10 가	2 11 100 5 50
2 10 가 , 가	2 11 100 5 50 가

(3 1 7)

	가 69 가
	250

(3 1 8)

	1 가 1 2 3 가 ,
	250

(3 1 9)

	1	가
	1	2
	6	가
	1	1,250
	2	875
	3	625
	4	375
	5	187 5
	6	125

) 1. , , ,
3 , 6
+ 1%

2.

(2) _____

□ 가 10 , 35
└ 55 ,

()

1	51	0	64	0
1	612	0	768	0
3	1,836	700	2,304	1,202
5	3,060	2,031	3,840	2,937
10	6,120	5,030	7,680	7,268
15	9,180	7,867	11,520	12,105
20	12,240		15,360	

()

1	52	0	54	0
1	624	0	648	0
3	1,872	510	1,944	601
5	3,120	1,568	3,240	1,734
10	6,240	3,440	6,480	3,862
15	9,360	4,190	9,720	5,035
20	12,480		12,960	

)

1 【 】

가 . (

, ,
)

()

90

,

. ,
2 (

)

90

.

,

가

가

.

2 【 】

,

()

.()

.

3 【 】

가

가

()
(1)

1. 1 가 1 ()
2

2. 2 : 가

가 180

:

1

1

() 2

10 【 】

- 1. ()
- 2. (,)
- 3. 가 180

- 4.
- 5. ()
- 6. , 가

1 3 1 2 ,
 3 2

가

11 【 10 () 】

10 () ,

3

· ,

10 .
1

. (2)
가
1
+ 1%

12 【 가 】

가 가

, 가

13 【 가 】

1

14 【

】

가

(1) _____

【 】

(: 가 2,000)

1 가 1	
2	500
(3 1 1)	
1 가 1	
2	200
(3 1 1)	
2 가	
가 180	
(3 1 2)	1,000

¹ 가 1 2 (3 1 1)	5 100
¹ 가 1 2 (3 1 1)	5 40
² 가 가 180 (3 1 2)	5 200

)

【 】

(: 가 2,000)

1	가 1	
2		
(3 1 1)	500	2 5 0
1	가 1	
2		
(3 1 1)	200	1 0 0
2	가	
가 180		
(3 1 2)	1,000	5 0 0

1 가 1 2	5	
(3 1 1)		
	100	50
1 가 1 2	5	
(3 1 1)		
	40	20
2 가 " " " 가 180	5	
(3 1 2)	200	100

(2)

가 10
35 , 55 ,

()

1	28	0	35	0
1	336	0	420	0
3	1,008	447	1,260	655
5	1,680	1,209	2,100	1,578
10	3,360	3,076	4,200	3,993
15	5,040	5,278	6,300	7,174
20	6,720	8,021	8,400	11,693

()

1	42	0	51	0
1	504	0	612	0
3	1,512	758	1,836	1,013
5	2,520	1,898	3,060	2,345
10	5,040	4,772	6,120	5,809
15	7,560	8,291	9,180	10,233
20	10,080	12,905	12,240	16,327

)

(3) _____

1.

" " " "

(가) () 가

(가)

() 가 (가)

" " 3
(1993-3)

1.	F 00
2.	F 01
3.	F 02
4.	F 03
5.	F 05.1

2. (意識障害)

『 』 .

(認知) ,

, 『 』 .

『 (意識混濁) 』 『 (意識變容) 』

『 』 (輕度)

[傾眠 : (覺醒)], (中度) [昏眠 :

], (高度)

[昏睡 :] .

, 『 』 『 』 Amentia(

), [(高度) - (錯覺), (幻覺) (不安), (不

穩), (興奮)]
[
가 ,
]

3. (判斷障害)

『 』 가

(가) :

() :

() : (平常)

(4) _____

5

3

(1993-3 1995.1.1)

1. ,	D 00
2.	D 01
3.	D 02
4.	D 03
5.	D 04
6.	D 05
7.	D 06
8.	D 07
9.	D 09

4

1 【 】

가 . (,
 ,
)
 .
 ,
가
 가 .

2 【 】

 ,
 ()
 . ()
)
 .

3 【 】

 가
 가
 (.)

(1)
 1. 가
 (3)
 4
 (, 가)
 :
 2. 가
 :

1 1
 1 120 가
 3 4
 2 1
 , 3
 180
 1 1 가

. (2 가)

1

+ 1%

11 【 가 】

가

가 가

, 가

12 【 가 】

1

13 【 가 】

가

..

(1) _____

【 】

(: 가 2,000)

(3 1 1)

	가	
	4	
	3 1	
	1	2
	2	3

(3 1 2)

	가	
	1	
	1	100
	2	150

【 】

(: 가 2,000)

(3 1 1)

	가		
	4		
	3 1		
	1	2	1
	2	3	1 5

(3 1 2)

	가		
	1		
	1	100	50
	2	150	75

(2)

가 10
35 , 55 ,

()

1	67	0	74	0
1	804	0	888	0
3	2,412	394	2,664	677
5	4,020	1,572	4,440	2,079
10	8,040	4,246	8,880	5,458
15	12,060	7,471	13,320	9,629
20	16,080	12,021	17,760	15,344

()

1	101	0	109	0
1	1,212	0	1,308	0
3	3,636	789	3,924	1,032
5	6,060	2,563	6,540	2,974
10	12,120	6,799	13,080	7,653
15	18,180	11,986	19,620	13,432
20	24,240	19,258	26,160	21,565

)

(3) _____

()

.					A00 - B99
.					C00 - D48
.					D50 - D89
.					E00 - E90
.					G00 - G99
.					H00 - H59
.					H60 - H95
.					I 00 - I 99
.					J00 - J 99
.					K00 - K93
.					L00 - L99
.					M00 - M99
.					N00 - N99
.					O00 - O99
.					P00 - P96
.					R00 - R99
.					S00 - T98
.					V01 - Y98
.		2	1	1	
.					

() 1. (,)

2.

3. ,

4. ,

,

5. (-
) ,

(4)

	()
* (皮膚·乳房 手術)	
1. (植皮術) (25cm ²)	2
2. (乳房切斷術)	2
* (筋骨 手術)	
[(拔釘術)]	
3. (骨移植術)	2
4. (骨髓炎·骨結核手術)	2
[(膿瘍)]	
5. (頭蓋骨觀血手術)	
[(鼻骨·鼻中隔)	2
]	
6. (鼻骨 觀血手術)	
[(鼻中隔彎曲症手術)	1
]	
7. (上顎骨·下顎骨·顎關節 觀血手術)	2
[(齒·齒肉)	
]	
8. (脊椎·骨盤 觀血手術)	2
9.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
10. (四肢切斷術)	
[가 · 가]	2
11. (切斷四肢再接合術)	
[(骨·關節) (離斷)	2
]	
12. (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1
[가 · 가]	

	()
13. . . . (筋·腱·韧带 観血手術) [가 · 가 · (筋炎·結節腫· 粘液腫手術)]	1
* . . . (呼吸器 胸部 手術) 14. . . . (慢性副鼻腔炎 根本手術) 1 15. . . . (喉頭全摘除術) 2 16. . . . (氣管· 氣管支·肺·胸膜手術) [(開胸術)] 2 17. . . . (胸郭形成術) 2 18. . . . (縱隔腫瘍 摘出術) 3	
* . . . (循環器·鼻 手術) 19. . . . (観血の血管 形成 術) [(血液透析用) SHUNT (形成術)] 2 20. . . . (靜脈瘤 根本手術) 1 21. . . .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開胸·開腹術)] 3 22. . . . (心膜切開縫合術) 2 23. . . . (直視下心臟内手術) 3 24. . . . (體內用) Pace Maker (埋込術) 2 25. . . . (鼻摘除術) 2	
* . . . (消化器 手術) 26. . . . (耳下腺 腫瘍 摘出術) 2 27. . . . (顎下腺腫瘍 摘出術) 1 28. . . . (食道離斷術) 3 29. . . . (胃切除術) 3	

	()
30. (胃·食道手術) [(開胸·開腹術)]	2
31. (腹膜炎手術)	2
32. (肝臟·膽囊·膽道·脾臟 觀血手術)	2
33. (脫腸 根本手術)	1
34.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1
35. (直腸脫 根本手術)	2
36. (腸·腸間膜手術) [(開腹術)]	2
37. (痔瘻·脫肛·痔核 根本手術) [(根治) (痔核)]	1
* (尿性器 手術)	
38. (腎移植手術) [(受 容者)]	3
39. (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經尿道的 操作)]	2
40. (尿道狹窄觀血手術) [(經尿道的 操作)]	2
41. (尿瘻閉鎖 觀血手術) [(經尿道的 操作)]	2
42. (陰莖切斷術)	3
43. (辜丸·副辜丸·精管·精索 ·精囊·前立腺手術)	2
44. (陰囊水腫 根本手術)	1
45. (子宮廣汎全摘除術) [(單純子宮全摘) (全摘除術)]	3

	()
46. (子宮頸管形成術·子宮頸管縫縮術)	1
47. (帝王切開娩出術)	1
48. (子宮外妊娠手術)	2
49. (子宮脫·脛脫手術)	2
50. (子宮手術)	2
[Polyp (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工妊娠中絕術)]	
51. (卵管·卵巢 觀血手術)	2
[(經腔的操作)]	
52. (卵管·卵巢 術)	1
* (內分泌器 手術)	
53. (下垂體腫瘍摘除術)	3
54. (甲狀腺手術)	2
55. (副腎全摘除術)	2
* (神經 手術)	
56. (頭蓋內 觀血手術)	3
57. (神經 觀血手術) [(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壓術·開放術·捻除術)]	2
58. (觀血的脊髓腫瘍 摘出手術)	3
59. (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
* (感覺器·視器 手術)	
60. (眼瞼下垂症手術)	1
61. (淚小管形成術)	1
62. (淚囊鼻腔 吻合術)	1
63. (結膜囊形成術)	1
64. (角膜移植術)	1

	()
65. (觀血的前房·虹彩·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1
66. (虹彩前後癒着剝離術)	1
67. (綠內障 觀血手術)	2
68. (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2
69. (硝子體 觀血手術)	1
70. (網膜剝離症手術)	1
71. Laser (冷凍凝固) (眼球手術) [(施術) 60 1]	1
72. (眼球摘除術·組織充填術)	2
73. (眼窩腫瘍 摘出術)	1
74. (眼筋移植術)	2
* (感覺器·聽器 手術)	
75. (觀血的鼓膜·鼓室形成術)	2
76. (乳樣洞削開術)	1
77. (中耳 根本手術)	2
78. (內耳 觀血手術)	2
79. (聽神經腫瘍 摘出術)	3
* (惡性新生物 手術)	
80. (惡性新生物 根治手術)	3
81. (惡性新生物 溫熱療法) [(施術) 60 1]	1
82. (惡性新生物 手術)	2

		()
* (上記以外 手術)		
83. (開頭術)		2
84. (開胸術)		2
85. (開腹術)		1
86. (衝撃波)		2
(体内結石破碎術)		
[(施術) 60 1]		
87. Fiberscope (血管) Basket Catheter		1
(脳・喉頭・胸部・腹部 臓器手術)		
[(施術) 60 1]		
*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88.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1
[5,000Rad (照射) (施術) 60 1]		

()

鏡 検査) [(生検, 腹腔

신체부위의 설명도

